

#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학전형관리기구로서 본 교에 설치·운영되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
2. 대학입학전형 자격과 선발기준 모형 개발
3. 입학 사정(전형자료, 적격기준, 사정방법 등)
4. 대학입학전형 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
5. 대학입학정보의 개발 및 홍보
6. 기타 대학입학전형에 관련한 사항

**제3조 (구성)** 위원회는 입학처장, 교역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총무처장, 기획처장,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둔다.

**제4조 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**제5조 (임기)**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 (간사)** 위원회의 행정 지원을 위해 입학과장을 간사로 한다.

**제7조 (회의)** ①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8조 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운영세칙)** 이 규정 외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·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